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3. 12. 4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" 검 토 보 고

(보고자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O 제출자: 구청장

O 제안일 : 2023. 11. 17.

O 회부일 : 2023. 11. 20. (의안번호 : 23-158)

2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(5년)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O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- O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
 - 「주차장법」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
-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(5년)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.

.

○ 조례안 개정내용

- (안 제2조의2) 존속기한 연장하는 내용임.
- (안 제8조)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는 내용임.

6. 종합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(회계의 구분)에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(5년)이 2023. 12. 31.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 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. 12. 31.로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